

제169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(제2차 본회의)

2010. 9. 14. (화) 10:00~

조례안 심사보고서

= 거창군 지하수조례안 =

산업건설위원회

【 목 차 】

1. 거창군 지하수조례안	-----	1면
---------------	-------	----

<의안번호 제2010 - 38호>

〔 거 창 군 지 하 수 조 례 안 〕 〔 심 사 보 고 서 〕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0년 8월 27일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0년 8월 30일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0년 9월 9일

2. 제안설명 및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「지하수법」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 관할구역의 지하수에 대한 적절한 개발·이용과 효율적인 보전·관리에 이바지하기 위함임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, 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할 수 있는 대상에 관한 사항을 제1장 총칙으로 규정함(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)
 - 정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대상: 지역지하수관측시설이나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·이용시설

- 지하수개발·이용 및 보전·관리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
조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
관한 사항을 제2장에서 규정함(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)
 - 위원회 구성인원: 7명 이내
 - 위원장: 부군수 / 부위원장: 위원 중에서 호선
 - 위원의 임기: 2년

-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·이용과 보전·관리에 드는 사업비
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설치·운영하는 지하수관리특
별회계의 재원과 용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3장에서
규정함(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)

-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·이용과 보전·관리에 필요한
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과·징수하는 지하수이용부
담금의 대상과 제외대상, 산정방법, 납입절차 및 조정
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제4장에서 규정함(안 제
17조부터 제21조까지)

- 그 밖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
하고,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·징수는 2012년 1월 1일부터
시행토록 부칙으로 규정함(안 제22조, 부칙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조례안은 1993년 12월 10일 제정된 「지하수법」에 의해 거창군 관할구역의 지하수에 대한 적절한 개발·이용과 효율적인 보전·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위하여 「거창군 지하수조례안」을 신규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「지하수법」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됨.

- 이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
 - 안 제1조부터 제2조 (목적 및 정의)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하는 필요조항이며,

 - 안 제3조 (수질검사 수수료 보조)는 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할 수 있는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 - 안 제2장 (지하수 관리위원회)은 지하수의 개발·이용 및 보전·관리에 관한 지하수 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됨.

 - 안 제3장 (지하수 관리 특별회계)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·이용과 보전·관리에 드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설치·운영하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재원과 용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며,

- 안 제4장 (지하수 이용 부담금)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·이용과 보전·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부과·징수하는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대상, 산정방법, 납입절차 및 조정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이 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 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 요지: 해당없음

6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